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관련〉

- 권성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36호)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7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7
1. 특별감사관(특별점검위원회)의 의의	7
2. 제정안의 기본체계	10
3. 조직이론 관점에서 제정안의 비교	17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20
1. 권성동의원안(특별감사관)	20
가. 감사대상(안 제2조)	20
나. 특별감사관의 임명(안 제3조)	22
다. 특별감사기간(안 제11조)	26
라. 특별감사관의 조치 권한(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28
마. 벌칙(안 제26조·제27조)	32

2. 박수민의원안(특별점검위원회)	34
가. 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34
나. 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36
다.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7조)	39
라. 특별점검(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44조)	41
마. 청문회(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45
바. 벌칙(안 제43조·제44조)	48
 [참고] 제정안의 개정문	 51

I. 제안경위

1. 권성동의원안

가. 제 안 자 : 권성동의원 등 108인

나. 제 안 일 : 2025. 3. 7.

다. 회 부 일 : 2025. 3. 10.

2. 박수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64인

나. 제 안 일 : 2025. 3. 12.

다. 회 부 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권성동의원안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실한 인력관리 실태 결과(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점검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 적발 등),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점검 결과(정보통

신기반 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리<6개>, 시스템보안<11개>, 인원 및 자산<7개>, 위기대응<7개> 등 31개 점검 항목에서 평가 점수 31.5점이 나왔으며, 31개 항목 중 0점을 받은 항목이 15개에 달함), 사법부 법관의 선관위 견직에 따른 불신 증폭, 최근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관련 선관위 관계자 영장청구 기각 사례 등으로 인해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과 조직·인사·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비리를 고발하는 투서 등을 받고도 “가족기업”이라며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등 제도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였고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로 자체 감사의 권능을 상실하여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왔고,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침해 결정(2023헌라5)으로 외부 제도적 감시의 장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그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사관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별감사의 감사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조직·인사·회계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특별감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함(안 제8조).
- 마.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에 필요한 출석·답변, 관계문서·물품 등의 자료제출, 금융기관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특별감사관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 사. 특별감사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제2조 각 호의 감사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제도개선, 징계 요구 등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함(안 제11조, 제12조).

아. 특별감사관은 징계요구, 변상책임, 시정·개선 요구, 고발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특별감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23조).

2. 박수민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이 심각한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로 하되,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바. 특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특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8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특별감사관(특별점검위원회)의 의의

특별감사관(권성동의원안) 또는 특별점검위원회(박수민의원안)는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 권한쟁의심판¹⁾ 결과²⁾에 따라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감사원) 대신 독립적 지위의 조사주체(특별감사관 또는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³⁾ 제1공화국 시기 선거를 관리하던 선거위원회는 내무부 부속기관이었으나, 3·15부정선거⁴⁾ 이후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됨.⁵⁾

1)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이 이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임.

2)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실시하였음.(2023헌라5)

3)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4)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를 의미함.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출처: https://museum.nec.go.kr/museum2018/bbs/7/3/1/2/0170912155756377100_view.do?article_id=20171226175208636100&article_category=12)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고위공무원 자녀의 특혜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 등은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⁶⁾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 제기는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이루어진 재검표 과정에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⁷⁾ 형상기억종이 투표지⁸⁾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된 바 있음.⁹⁾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¹⁰⁾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6) 조선일보(2025.4.8.), “선관위, 고위공무원 자녀 등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진행”

대구신문(2025.3.4.), “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7)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푸른색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겹쳐 인쇄된 투표지

8) 접힌 자국이 없는 뾰뚱한 종이 투표지

9) 제22대국회 제422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p.98.

○조은희 위원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연수구 송도2동 제6투표소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총 투표수 1974표 중 약 15%에 달하는 294표가 무더기로 무효 처리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재검표 과정 중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형상기억 종이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는 1000매 이상 나왔는데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신지 또 선관위원장님을 여러 차례 역임한 총장님 경험으로 볼 때 이것들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10) 문화일보(2025.3.12.), “가족채용 비리 묵인, 외부통제는 무풍지대...괴물 선관위 만들었다”

이에 제정안은 행정부 외부의 독립된 조사주체(특별감사관 또는 특별점검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와 투표·개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 제정안의 배경 》



2. 제정안의 기본체계

각 제정안의 기본체계를 살펴보면 권성동의원안은 장의 구분 없이 28개 조문, 박수민의원안은 총 4개 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기본체계 》

권성동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제명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명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1~§3)
§1(목적)	§1(목적)
	§2(정의)
	§3(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장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특별점검을 위한 특별점검위원회 등 (§4-§39) 제1절 특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2(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 등)	§4(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
§3(특별감사관의 임명)	§5(특별점검위원회의 독립성)
§5(특별감사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6(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
§7(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	§7(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
§11(특별감사기간 등)	§8(위원장의 직무)
§6(특별감사관 직무 범위와 권한 등)	§9(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3(신분보장)	§10(위원의 겸직금지 등)
§10(특별감사관 등의 의무)	§11(위원의 결격사유)
§4(특별감사관의 결격사유)	§12(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3(의사의 공개)
	§14(특별점검위원회의 정원 등)
	§15(소위원회의 설치)
	§16(사무처의 설치)
	§17(자문기구의 설치)
	§18(직원의 신분보장)
	§19(징계위원회)
§8(관계 기관의 협조)	§20(공무원 등의 파견)
	제2장 제2절 특별점검
§9(출석 답변·자료·장부 등 제출·봉인 등)	§21(특별점검)
	§22(의견제출)
	§23(특별점검의 개시)

	§24(특별점검의 방법)
	§25(동행명령)
§13(징계요구 등)	§26(고발 및 수사요청)
§14(변상책임 요구 등)	
§15(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16(시정 등의 요구)	
§17(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등 요구)	
§18(권고 등)	
§19(고발)	
	제2장 제3절 청문회
	§27(청문회의 실시)
	§28(국가 등의 지원)
	§29(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30(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31(증인등의 선서)
	§32(증인등의 보호)
	§33(검증)
	제2장 제4절 특별점검위원회 활동 등
	§34(업무의 위임·위탁 등)
	§35(특별점검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36(책임의 감면)
§20(보수 등)	§37(운송비·여비 등)
§12(특별감사 결과의 보고)	§38(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24(회계보고 등)	
§21(퇴직 등)	§39(사무처의 존속기간)
§22(해임 등)	
§25(행정소송과의 관계)	제3장 보칙(§40~§42)
	§40(비밀준수 의무)
	§41(자격사칭 금지)
§2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43~§52)
§26(벌칙)	§43(벌칙)
§27(벌칙)	§44(과태료)
부 칙	
§1(시행일)	§1(시행일)
§2(유효기간)	§2(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3(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4(세부 운영 기준)	

구체적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권성동의원안은 특별감사관의 임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와 내용이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함)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 권성동의원안과 특검법의 유사성 》

권성동의원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명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	§1(목적)
§2(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 등)	§2(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3(특별감사관의 임명)	§3(특별검사 임명절차)
	§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4(특별감사관의 결격사유)	§5(특별검사의 결격사유)
§5(특별감사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6(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6(특별감사관 직무 범위와 권한 등)	§7(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7(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	§8(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8(관계 기관의 협조)	
§9(출석 답변·자료·장부 등 제출·봉인 등)	
§10(특별감사관 등의 의무)	§9(특별검사 등의 의무)
§11(특별감사기간 등)	§10(수사기간 등)
	§11(재판기간 등)
§12(특별감사 결과의 보고)	§12(사건의 처리보고)
§13(징계요구 등)	
§14(변상책임 요구 등)	
§15(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16(시정 등의 요구)	
§17(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등 요구)	
§18(권고 등)	
§19(고발)	
§20(보수 등)	§13(보수 등)
§21(퇴직 등)	§14(퇴직 등)
§22(해임 등)	§15(해임 등)
§23(신분보장)	§16(신분보장)
§24(회계보고 등)	§17(회계보고 등)
§25(행정소송과의 관계)	§18(재판관할)
	§19(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20(이의신청)
	§21(위임)
§26(벌칙)	§22(벌칙)
§27(벌칙)	
§2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만, 특별검사가 근거 법률에 따라 수사와 공소제기¹¹⁾ 여부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인데 반해,¹²⁾ 권성동의원안의 특별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변상책임 요구(안 제14조), 시정 요구(안 제16조), 권고(안 제18조) 및 고발(안 제19조) 등을 하는데 그치고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압수수색·체포 등)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박수민의원안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체계와 내용이 주요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11)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함.

1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8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 ⑥ (생략)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박수민의원안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유사성 》

박수민의원안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명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안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목적)	§1(목적)
§2(정의)	§2(정의)
§3(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2장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특별점검을 위한 특별점검위원회 등 제1절 특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4(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	§3(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5(특별점검위원회의 독립성)	§4(위원회의 독립성)
§6(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	§5(위원회의 업무)
§7(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	§6(위원회의 구성 등)
§8(위원장의 직무)	§7(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9(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8(위원장의 직무)
§10(위원의 겸직금지 등)	§9(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1(위원의 결격사유)	§10(위원의 겸직금지 등)
§12(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1(위원의 결격사유)
§13(의사의 공개)	§1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4(특별점검위원회의 정원 등)	§13(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5(소위원회의 설치)	§14(의사의 공개)
§16(사무처의 설치)	§15(위원회의 정원 등)
§17(자문기구의 설치)	§16(소위원회의 설치)
§18(직원의 신분보장)	§18(사무처의 설치)
§19(징계위원회)	§17(자문기구의 설치)
§20(공무원 등의 파견)	§19(직원의 신분보장)
	§20(징계위원회)
	§21(공무원 등의 파견)
제2장 제2절 특별점검	제3장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1절 진상규명조사
§21(특별점검)	§22(진상규명조사)
§22(의견제출)	§23(조사신청)
§23(특별점검의 개시)	§24(각하결정)
§24(특별점검의 방법)	§25(조사의 개시)
§25(동행명령)	§26(조사의 방법)
§26(고발 및 수사요청)	§27(동행명령)
	§27의2(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28(고발 및 수사요청)
	§29(수사 및 재판 기간 등)

	§30(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30의2(공소시효의 정지)
제2장 제3절 청문회	제3장 제2절 청문회
§27(청문회의 실시)	§31(청문회의 실시)
§28(국가 등의 지원)	§32(국가 등의 지원)
§29(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33(증인 출석 등의 요구)
§30(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34(증인 출석 등의 의무)
§31(증인등의 선서)	§35(증인 등의 선서)
§32(증인등의 보호)	§36(증인 등의 보호)
§33(검증)	§37(검증)
제2장 제4절 특별점검위원회 활동 등	제4장 보칙
§34(업무의 위임·위탁 등)	§38(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39(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40(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41(업무의 위임·위탁 등)
§35(특별점검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4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45(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36(책임의 감면)	§47(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37(운송비·여비 등)	§46(운송비·여비 등)
§38(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48(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49(자료기록단의 설치)
	§49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39(사무처의 존속기간)	§50(사무처의 존속기간)
제3장 보칙	
§40(비밀준수 의무)	§42(비밀준수 의무)
§41(자격사칭 금지)	§43(자격사칭의 금지)
§4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	제5장 벌칙
§43(벌칙)	§51(조사)
	§52(조서작성)
	§53(조서의 대용)
	§54(출석요구)
	§55(벌칙)
§44(과태료)	§56(과태료)

양자는 모두 독립적인 점검(조사)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주요 사항을 조사하려는 것이나, 목적, 조사기구의 구성, 활동기간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

《 박수민의원안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차이점 》

구 분	박수민의원안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목적	선거사무와 투표·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 책임소재 규명
조사기구 구성	(공통) 국회 추천 9명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정당 교섭단체 추천 4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4명	
	9명 위원 중 상임위원은 3명	9명 위원 중 상임위원은 5명
	국회의장 추천 1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 소속정당 교섭단체 추천 1명	대통령 소속정당 교섭단체 추천 2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1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2명
활동기간	특별점검개시결정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한차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조사개시 결정 있는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결국, 특별감사관 임명(권성동의원안)과 특별점검위원회 설치(박수민의원안)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점검 장치라는 점에 있어 공통점을 갖지만, 조직적 측면에서 특별감사관은 단일 책임자 체계의 계선조직(line organization)이고, 특별점검위원회는 집단 의사결정 구조의 위원회 조직(committee organization)이므로

양자를 조직적 측면에서 먼저 비교하고 각 제정안별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3. 조직이론 관점에서 제정안의 비교¹³⁾

계선조직(line organization)이란 계층제의 구조를 가진 조직을 의미함. 즉,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 책임과 결정권을 가지는 수직적 조직형태로서 행정체계에 있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임.

반면에, 위원회조직(committee organization)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이는 행정의 공정 및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일반적으로 계선조직의 장점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여 업무수행이 능률적이며, 단일기관(unitary organization)으로 구성되어 정책결정이 신속하고, 강력한 통솔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고, 단점은 업무량이 과다해지며, 조직의 장이 주관적·독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조직이 지나친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임.

그리고, 위원회조직의 장점은 합의제 조직으로 수평적인 업무의 조정과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조직이 신축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고, 단점은 조직의 복잡성으로 조직 내 알력과

13) 이하의 내용은 주로 다음 논문을 참고함

김종성, “한국의 보조,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행정학보 41권3호(2007)

나채준,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홍익법학 제14권제4호(2013)

불화가 생길 수 있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음.

제정안의 경우 이러한 조직적 특성을 바탕으로 ① 특별감사관을 임명하면 감사관이 모든 감사활동을 총괄·지휘함으로써 명확한 지휘계통과 신속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②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9명 위원의 집단의사결정(안 제12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중립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조직이론 관점에서 제정안의 비교 》

구 분	특별감사관(권성동의원안)	특별점검위원회(박수민의원안)
조직유형	계선조직(line organization)	위원회조직(committee organization)
의사결정	단일 책임자 구조 (감사관이 모든 감사활동 총괄·지휘)	합의형 집단의사결정 구조 (9명의 위원이 협의·표결하여 결정)
지휘체계	신속한 수직적 지휘계통 (상명하달식 명확한 권한구조)	다수결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절차가 느릴 수 있음)
책임소재	1인에게 집중	집단에게 분산
적합조직	집행 중심 조직 (특정 감사 목적 강력·신속한 실행력)	조사 및 조정 중심 조직 (다양한 의견 수렴, 중립적 판단에 적합)
유사사례	특별검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적으로, 각 제정안은 조직유형에 따라 조문의 체계와 내용이 현격히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에 앞서 어떠한 조직유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통제에 더욱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권성동의원안(특별감사관)

가. 감사대상(안 제2조)

제2조(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 등) 이 법에 따른 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1. 선거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선거관리(외부 해킹 논란, 투·개표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망 분리(인터넷망/업무망/선거망) 개선여부, 통합선거인명부 관리정도, 투표용지 인쇄관리 및 보안대책, 온라인시스템 대리투표 방지 관련 취약 점검, 선상투표 관리, 재외선거망 관리, 개표 DB해킹 보안유지 대책 마련여부, 선거관리위원회시스템 관리 외부 위수탁 업체의 보안유지대책 마련여부, 용역업체 수의계약 등 위반점검, 기타사항 등) 및 점검이행여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인사·회계 관리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무 등 근태 실태
5.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

제정안은 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으로 ① 선거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선거관리 개선여부 등과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인사·회계 관리,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무 등 근태 실태, ⑤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을 규정하고 있음.

감사대상을 지나치게 넓힐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이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특별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짧게 규정된 특별감사기간(안 제11조; 6개월) 동안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

려가 있으므로 감사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감사관의 도입 취지와 더불어 한정된 시간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정안의 감사 대상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 관리(제2호)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감사원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¹⁴⁾ 특별감사의 대상에 중복하여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2년간 감사원의 직무감찰¹⁵⁾을 통해 조사하였던 사항들이 재차 감사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복감사에 해당될 우려가 높다는 입장임.

14) 회계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됨. 반면, 직무감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음.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15) 감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2016년 이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운동 및 인사관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진행하여 2025년 2월 25일 감사결과를 확정하 바 있음.

나. 특별감사관의 임명(안 제3조)

- 제3조(특별감사관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감사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명의 특별감사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사원법」 제17조¹⁶⁾의 직에 20년 이상, 제17조의¹⁷⁾의 직급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특별감사관의 임명 절차로 ①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감사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② 대통령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명의 특별감사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며, ③ 국회의장이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이었던 사람 중에서 원내 제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16) 「감사원법」 제17조(직원)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17) 「감사원법」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①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고위감사공무원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군(群)을 말한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감사교육원장·감사연구원장·실장·국장
2. 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 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서면으로 추천하고, ④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 특별감사관의 임명 절차 》

주 체	내 용
국회의장	시행일부터 3일 이내, 특별감사관 임명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
대통령	요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후보자 추천 국회에 서면 의뢰
국회의장	서면 추천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감사원에서 20년 이상, 고위감사공무원단이었던 사람 중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 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① 후보자격 : 감사원 20년 이상, 고위감사공무원단 ② 추천주체 : 원내 제1·2교섭단체
대통령	추천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후보자격”을 제정안은 감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이었던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의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이 선거관리 개선여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인사 관리, 인력관리·근태 실태 등 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 공무원¹⁸⁾으로 후보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인정되나, 20년 이상의 근무기간 요건이 적절한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¹⁹⁾

참고로, 「특별감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감사의 후보자를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둘째, “추천주체”를 제정안은 원내 제1·2교섭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추천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별감사관의 추천주체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8)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19) 감사원법은 전문성 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음.

「감사원법」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제외한다)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0) 「특별감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감사 임명절차) ② 특별감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제정안은 제5조에서 특별감사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¹⁾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²⁾

21) 제정안 제5조(특별감사관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감사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 특별감사기간(안 제11조)

- 제11조(특별감사기간 등)** ① 특별감사관은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감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감사관보 및 감사관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감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자료요구 등 특별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특별감사 결과를 조치한다.
- ③ 특별감사관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특별감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1회에 한정하여 감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감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특별감사기간으로 ① 사전준비를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감사기간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1회에 한정하여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의 성격과도 연계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기간까지만 그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²³⁾ 채용비리나 시스템 보안사태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일련의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려는 것임.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23) 한시법이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률을 의미함.(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
제정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1조에 따라 만료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여부는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감사 대상의 범위(안 제2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사전준비를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며 1회에 한정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⁴⁾

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라. 특별감사관의 조치 권한(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제13조(징계요구 등) ①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까지로 한다)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책임 요구 등)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결정 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명령 요구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변상명령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변상 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특별감사관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특별감사관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시정 등의 요구)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등의 요구)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권고 등)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발) ① 특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특별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이 제12조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

제정안은 특별감사관의 임명 및 절차, 신분, 벌칙 등에 관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감사관의 조치 권한과 관련된 내용(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은 「감사원법」상 감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부분(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법과의 비교 》

권성동의원안	감사원법
	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13(징계요구 등)	§32(징계 요구 등)
§14(변상책임 요구 등)	§31(변상책임의 판정 등)
§15(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32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16(시정 등의 요구)	§33(시정 등의 요구)
§17(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요구)	§34(개선 등의 요구)
§18(권고 등)	§34의2(권고 등)
§19(고발)	§35(고발)
없음	§34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구체적으로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할 경우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3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 변상명령 요구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

또한, 특별감사관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5조), 특별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

그리고, 특별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도상·행정상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안 제17조),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18조),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9조).

다만, 제정안은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²⁵⁾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과거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하여 일회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정안에는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고 보여짐.

25)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마. 벌칙(안 제26조·제27조)

제26조(벌칙)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사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 특별감사관 등이나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감사관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감사관의 임명 및 활동에 있어 특별감사의 실시, 관계 기관의 협조, 결과 조치 등 일련의 절차가 적법하고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감사 거부 및 방해, 비밀 누설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적절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의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음.²⁶⁾

따라서, 특별감사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26) 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1헌바11

과태료는 특별감사관 활동의 중요성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정안의 벌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대체로 일치함.²⁷⁾

2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수사내용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박수민의원안(특별점검위원회)

가. 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제4조(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조사를 위한 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 ①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이하 “특별점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나.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실시)
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
마. 그 밖에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
2. 제1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에 대한 조치
3. 특별점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정안은 선거사무 및 투표·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점검위원회로 하여금 ① 최근 실시한 주요 공직선거의 선거사무 및 투표·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②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③ 특별점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점검 대상을 지나치게 넓힐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이례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별점검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짧게 규정된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7조; 1년) 동안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점검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점검위원회의 도입 취지와 더불어 한정된 시간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제6조(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지명하여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2.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3.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특별점검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을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하고, 9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상임위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상임위원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위원 구성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1명, 여당 및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하여 정치적 균형이 갖추어

진 것으로 보이나, 정당의 추천권은 교섭단체에 한정하여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유사한 입법례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⁸⁾

둘째, “위원 자격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선거사무 및 투표·개표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8)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하 생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하 생략)

중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각 위원은 직무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되므로(안 제9조)²⁹⁾ 해당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대부분의 입법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³⁰⁾

29) **제정안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특별점검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30)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양·선박·잠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화학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교육계·언론계·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7조)

제7조(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최초로 제23조³¹⁾에 따른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점검 완료 후 제38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정안은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목적과 특별점검 대상의 범위(안 제4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31) 제정안 제23조(특별점검의 개시)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특별점검개시 결정을 한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점검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개정으로 연장된 것으로 법 제정(2017.12.12. 제정) 당시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였으며, 한 차례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³²⁾

32)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법률 제17751호, 2020.12.22. 일부개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법률 제15213호, 2017.12.12. 제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특별점검(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44조)

제21조(특별점검) 특별점검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공직선거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행한다.

제22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특별점검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상·방법(기술적 수단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특별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등의 선거의 오류와 흠결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점검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의견제출의 절차와 방법,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특별점검의 개시)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특별점검개시 결정을 한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점검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점검의 방법)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1.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관련 문서 열람

2.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투표록, 개표록 등의 확인

3.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점검 관련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4. 특별점검 관련 관계자,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5.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6. 선거관리위원회등의 선거의 오류와 흠결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 청취

7. 특별점검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

8. 그 밖에 특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⑥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동행명령)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6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 특별점검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특별점검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정안은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써 특별점검개시 결정을 하도록 하되(안 제23조), 누구든지 특별점검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2조).

또한, 특별점검위원회는 관련 문서 열람,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의 제출요구 등을 통하여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24조), 특별점검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5조),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4조제1항).

한편, 특별점검 결과 점검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6조).

특별점검과 관련된 조문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체계 및 조문과 유사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참고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도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 제출 및 동행명령 불응 시의 처벌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음.³³⁾

33)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마. 청문회(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27조(청문회의 실시)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특별점검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 등의 지원) 특별점검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검증)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위원회의의 결로 특별점검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함)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 이 경우 특별점검위원회가 국가기관등³⁴⁾에게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안 제28조).

그 밖에 제정안은 증인등의 출석요구(안 제29조), 증인등의 출석의무(안 제30조), 증인 등의 선서(안 제31조), 증인등의 보호(안 제32조), 검증(안 제33조) 등 청문회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음.

청문회에 관한 조문 역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체계 및 조문과 유사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증인등의 보호와 관련해 증인등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6조제2항)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⁵⁾

34) 제정안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35)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바. 벌칙 및 과태료(안 제43조·제44조)

제43조(벌칙) ①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4.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5.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1조를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에 있어 특별점검의 실시, 청문회, 결과 조치 등 일련의 절차가 적법하고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사 불응 및 방해, 허위진술, 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적절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의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음.³⁶⁾

따라서,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특별점검위원회 활동의 중요성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정안의 벌칙 및 과태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체로 일치함.³⁷⁾

36) 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1헌바11

37)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5조(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332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권성동의원안(특별감사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특별감사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사관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 등) 이 법에 따른 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1. 선거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선거관리(외부 해킹 논란, 투·개표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망 분리(인터넷망/업무망/선거망) 개선여부, 통합선거인명부 관리정도, 투표용지 인쇄관리 및 보안대책, 온라인시스템 대리투표 방지 관련 취약 점검, 선상투표 관리, 재외선거망 관리, 개표 DB해킹 보안유지 대책 마련여부, 선거관리위원회시스템 관리 외부 위수탁 업체의 보안유지대책 마련여부, 용역업체 수의계약 등 위반점검, 기타사항 등) 및 점검이행여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인사·회계 관리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무 등 근태 실태
5.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

제3조(특별감사관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감사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명의 특별감사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사원법」 제17조의 직에 20년 이상, 제17조의2의 직급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감사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감사관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감사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감사관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감사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에 대한 총괄 및 특별감사결과 확정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감사관보, 감사관,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 및 제8조의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와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특별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감사 활동의 지원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 ① 특별감사관은 「감사원법」 제17조의 직에 15년 이상, 제17조의2의 직급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 2명의 특별감사관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감사관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명의 특별감사관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감사관보는 특별감사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내용과 관련된 특별감사를 담당하고 감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 특별감사관보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감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특별감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특별감사업무를 위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의 예산지원은 보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감사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출석 답변·자료·장부 등 제출·봉인 등)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특별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자료 제출 요구

3. 참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특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특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특별감사관 등의 의무) ① 특별감사관, 특별감사관보, 감사관 및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감사관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감사관 등과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감사관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감사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특별감사기간 등) ① 특별감사관은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감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감사관보 및 감사관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감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자료요구 등 특별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특별감사 결과를 조치한다.

③ 특별감사관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특별감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1회에 한정하여 감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감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감사 결과의 보고) ① 특별감사관은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에 대하여 감사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요구 등) ①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까지로 한다)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책임 요구 등)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결정 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명령 요구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변상명령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변상

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특별감사관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특별감사관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시정 등의 요구)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등의 요구)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권고 등)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발) ① 특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특별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이 제12조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

제20조(보수 등) ① 특별감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급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감사관보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의 예에 준한다.

③ 감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감사관의 퇴직 시까지 특별감사관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퇴직 등) ① 특별감사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감사관 등이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 제7조에 따른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사관 등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감사관 등은 전임 특별감사관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감사관을 임명하는 경우 제11조의 감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감사관의 감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감사관이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감사관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감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감사관 등은 제12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22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사관 등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감사관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감사관보, 감사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감사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특별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신분보장) 특별감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24조(회계보고 등) 특별감사관은 감사 기간이 만료되면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감사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소송과의 관계) 감사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사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 특별감사관 등이나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감사관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감사관, 특별감사관보, 감사관 및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1조에 따라 만료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세부 운영 기준) 이 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감사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박수민의원안(특별점검위원회)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안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말한다.
2. "투·개표 시스템"이란 공직선거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물을 말한다.
3. "특별점검"이란 선거사무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하여 오류와 흠결을 점검·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특별점검을 위한 특별점검위원회 등

제1절 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조사를 위한 특별점검위원회의 설치) ①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이하 "특별점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나.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실시)

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

마. 그 밖에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

2. 제1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에 대한 조치

3. 특별점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특별점검위원회의 독립성)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조(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지명하여 추천하는 각 1명으로 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2.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3.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특별점검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최초로 제23조에 따른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점검 완료 후 제38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특별점검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특별점검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그 밖에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특별점검 대상이 되는 공직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특별점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① 특별점검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점검위원회의 정원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점검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점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의 설치) ① 특별점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특별점검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점검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특별점검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징계위원회) ①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특별점검

제21조(특별점검) 특별점검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공직선거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행한다.

제22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특별점검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상·방법(기술적 수단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특별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등의 선거의 오류와 흠결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점검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의견제출의 절차와 방법, 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특별점검의 개시)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특별점검개시 결정을 한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점검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점검의 방법)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1. 선거사무 및 투·개표 시스템 관련 문서 열람
2.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투표록, 개표록 등의 확인
3.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점검 관련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4. 특별점검 관련 관계자,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5.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6. 선거관리위원회등의 선거의 오류와 흠결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 청취
7. 특별점검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
8. 그 밖에 특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⑤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점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동행명령)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특별점검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6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 특별점검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특별점검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청문회

제27조(청문회의 실시)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특별점검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 등의 지원) 특별점검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로부터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검증)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점검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특별점검위원회 활동 등

제34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특별점검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특별점검위원회에 특별점검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특별점검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특별점검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특별점검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특별점검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특별점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점검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특별점검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5.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에 관한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
6. 선거 및 투개표시스템 지원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

검·관리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특별점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특별점검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장 보칙

제40조(비밀준수 의무)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특별점검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특별점검위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특별점검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특별점검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4.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5.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1조를 위반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특별점검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특별점검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특별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